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96
----------	-------

발의연월일 : 2025. 12. 22.

발 의 자 : 박범계 · 강준현 · 김남근
이광희 · 박지원 · 문정복
박정현 · 이성윤 · 강득구
이건태 · 백승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터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어 경쟁제한상태의 해소 및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신속한 해소방안으로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으며, 사업자가 심의절차 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동의의결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적인 방식으로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방식 대신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의의결 권고 및 동의의결의 기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심인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동의의결 절차 중단 사유를 규정함(안 제90조).

다. 사업자가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제5항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중 “제90조제7항”을 “제90조제9항”으로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시정방안 준수 요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피심인”이라 한다)에게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소방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받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

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요구는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피심인이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을 요구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90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를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를결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2. 신청인이 동의를결 절차 중단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동의를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를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때 제10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행위인 경우에는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결 절차가 중단된 사건
2. 제9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를결이 취소된 사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를결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5. 제90조제9항----- ----- ----- -----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88조의2(시정방안 준수 요구)</u> ① <u>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피심인”이라 한다)에게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을 해소할 수 있</u>

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
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는 해소방안을 요구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
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
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
받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에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
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
여 진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생략)

<신 설>

<신 설>

요구는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피심인이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을 요구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2. 신청인이 동의의결 절차 중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동의를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

단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동의의결 절차를 진
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제4항-----

-----.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
제6항-----

-----.

⑧ -----제7항-----

-----.

⑨ -----제8항-----

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
 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
 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
 다.

⑧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
 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
 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
 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
 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
 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
 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
 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⑩ 제9항-----
 -----제7항-----

⑪ 제9항-----

⑫ -----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1. · 2. (생략)

<신설>

3. ~ 5. (생략)

⑪ (생략)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 ④

(생략)

<신설>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를 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때

3. ~ 5. (현행과 같음)

⑬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행위인 경우에는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동 의의결 절차가 중단된 사건

2. 제9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 호에 따라 동의를결이 취소

⑤ (생 략)	<u>된 사건</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